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재산등록의무자에게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공직자윤리법」(법률 제19854호, '23.12.26 공포, '24.6.27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제공동의서 명칭을 변경하고, 정보제공동의서 등에 자동차·회원권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의 제목“(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등)”을“(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부동산정보”를 각각 “부동산정보 등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의2서식의 제목 “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”를 “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등 제공동의서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앞쪽)

1.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: ○○공직자윤리위원회
2. 정보제공 목적: 「공직자윤리법」 제5조제1항, 제6조제1항·제2항,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 재산 등록·신고를 위한 금융거래(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잔액, 부동산·자동차·회원권 자료의 제공
3. 동의서 유효기간: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동의철회서 수리 전까지
4. 등록의무자(정보제공 요청자) 인적 사항

성명	소속	직위	직급 등

5. 동의자(등록의무자 포함) 인적사항

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	휴대전화번호	제공 정보 (해당 항목에 “√” 표시)					정보 제공에 동의함 (서명 또는 인)
				금융 거래	부동산	가상 자산	자동차	회원권	
				[]	[]	[]	[]	[]	

				[]	[]	[]	[]	[]	
				[]	[]	[]	[]	[]	
				[]	[]	[]	[]	[]	
				[]	[]	[]	[]	[]	
				[]	[]	[]	[]	[]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5조제1항, 제6조제1항·제2항,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등록·신고를 위하여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자의 금융거래 내용, 부동산·자동차·회원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요청하며, 동의자는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

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에 기호(○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○ 자동차 등록 정보

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에 기호(○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○ 회원권 보유 정보

별지 제3호의3서식, 별지 제18호의7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등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

1. 등록의무자 인적 사항

성명	소속	직위	직급 등

2. 정보제공 등의 철회자

관계	성명	철회사유	제공동의 철회 정보 (해당 항목에 “√” 표시)					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함 (서명 또는 인)
			금융 거래	부동산	가상 자산	자동차	회원권	
			[]	[]	[]	[]	[]	
			[]	[]	[]	[]	[]	
			[]	[]	[]	[]	[]	
			[]	[]	[]	[]	[]	
			[]	[]	[]	[]	[]	
			[]	[]	[]	[]	[]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 또는 부동산·자동차·회원권 정보 제공 동의를 위 사유로 철회하려고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

작성방법

○ 금융거래(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) 또는 부동산·자동차·회원권 정보제공에 동의를 했던 사람 중 결혼, 사망 등 신분상 변동 및 변심 등의 사유로 동의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‘관계’ 란에는 등록의무자와의 관계(부, 모, 배우자, 자녀 등)와 철회 사유(고지거부, 등록제외, 그 밖의 사유)를 적으십시오.

취업 예정 확인서

취업 예정자 인적 사항	성명	생년월일	
	소속		
	직위	직급 등	
취업예정 사실	취업예정기관 명칭	기관의 규모 (억원)	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
	취업예정 직위 및 예상연봉액	취업예정일	
채용 경위 및 채용 후 역할	채용방법 ※ 공모·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적고, 공모인 경우 홈페이지 등 채용공고문 별첨		
	채용이유		
	채용 후 담당업무		
	역할 및 활용계획		
작성자		연락처(사무실/휴대폰/FAX/E-mail)	

위 신청인이 해당 기관에 취업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기관명

(인)

○○ 공직자윤리위원회

귀하

작성방법

- 소속·직위·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,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·직위·직급 등을 적으십시오.
-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'직급 등'란 작성방법
 -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. 다만,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·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. [예: 고위공무원 가등급]
 -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(외무공무원의 경우)을 적으십시오. [예: 서기관, 8등급]
-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
 - 법 제17조제1항제1호(영리사기업체)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, 같은 항 제3호에서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(법무법인등, 회계법인, 세무법인,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, 합작법무법인)은 연간 외형거래액을, 같은 항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(사회복지법인 등)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.
-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며, 취업이 예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취업을 지원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업무취급승인신청서

신청인 인적사항	성명	생년월일	
	퇴직 전 소속	퇴직 전 직위	
	퇴직일	퇴직 전 직급 등	
	휴대전화번호	전자우편주소	
	주소		
취업 (예정) 사실 ※개업 등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절히 기재	기관명	취업(예정)직위	
	취업(예정)일	기관규모 (억원)	자본금 또는 기본재산
			외형거래액
	취업 후 담당업무		
업무취급 승인신청 업무·사유	업무취급 승인신청 대상업무 *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재		
	승인신청 사유 *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	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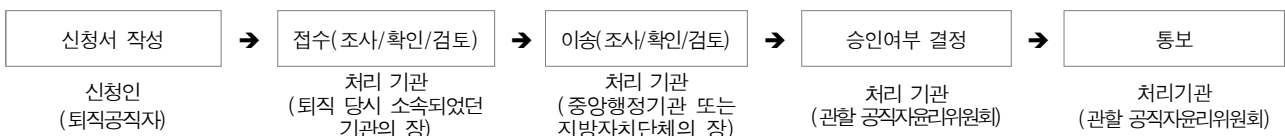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

첨부서류	「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8호의7서식(취업 예정 확인서), 취업 증명 서류(재직증명서 등), 개업 증명 서류(사업자등록증 등) 중 하나를 첨부하십시오.
------	---

업무 처리절차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3(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등) ① 영 제5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및 <u>부동 산정보</u>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3 호의2서식에 따른다.	제3조의3(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) ① ----- ----- <u>부동</u> <u>산정보</u> 등 ----- -----.
② 영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금 융거래 및 <u>부동산정보</u>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3호 의3서식에 따른다.	② ----- ----- <u>부동산정보</u> 등 ----- ----- 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